

채용 직무설명자료

○ 직무 개요

직책	상임 감정위원(수탁)	소속	의료사고 감정단
----	-------------	----	----------

○ 직무 목적

목적	<p>풍부한 의료지식, 다양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진료과목별 의료 전문가를 임용하여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제26조에 따른 의료사고 감정단의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·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</p>
----	---

○ 직무수행 내용
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에 관한 사항 ● 의료분쟁 조정·중재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에 관한 사항 * 감정부(의료인 2명, 법조인 2명, 소비자권익위원 1명) 회의 개최, 운영 ● 의료분쟁의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●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에 관한 사항 ●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에 관한 사항 ● 그 밖에 의료사고 감정단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
----	--

○ 직무 요건

구분	상세내용
자격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●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진료과목별 전문 의료지식, 의료사고 감정업무와 관련된 지식 ● 의료분쟁 조정·중재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
필요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감정부장으로서는 감정부 회의 진행 및 타 부서와의 협업 등을 위한 의사 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 ● 최신 의학지식 습득 등을 위한 자기개발 능력 ● 감정서 작성 등을 위한 문서작성 능력 ● 조직성과 제고 및 구성원 관리를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, 소통능력
직무수행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의료사고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정성 ●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청렴한 자세와 규정 준수 등 올바른 직업관 ● 적극적인 업무수행 및 대내외 협업, 의사소통 태도